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에 대한 규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용료 결정·감면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법 제19조의2 및 시행령(안)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한 사용료의 징수, 결정 및 감면 권한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 법 제19조의2제5항의 취지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사용 용도,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지 여부 등 사용료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함(안 제27조의2제1항)
- 나. 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27조의2제2항)
- 다. 환경부장관과 한국환경공단이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사용료를 결정 및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한국환경공단 운영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신설(안 제27조의2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합의 전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 칙

일부개정령안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사용료)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를 결정할 때에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사용 용도,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사용 승인하는 경우

2.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공단 이사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7조의2(사용료)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를 결정할 때에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사용 용도,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사용 승인하는 경우 2.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공단 이사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	---